



「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」 상환유예 업무지침

2020. 2.



보건건강위생과

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상환 유예 지침

□ **상환유예** : 747백만원(2020. 2. 11. 기준)

□ **지원대상**

- 용자상환 확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존 용자금이 거치기간 중에 있거나 원금 상환 중에 있는 경우, 조건 없이 1년간 만기연장 (용자상환 확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상환이 도래한 경우 상환하여야 함.)

□ **유예방법** : 만기연장

- 유예 적용일 : 은행 약정 체결일

- 유예기간 : 1년 범위 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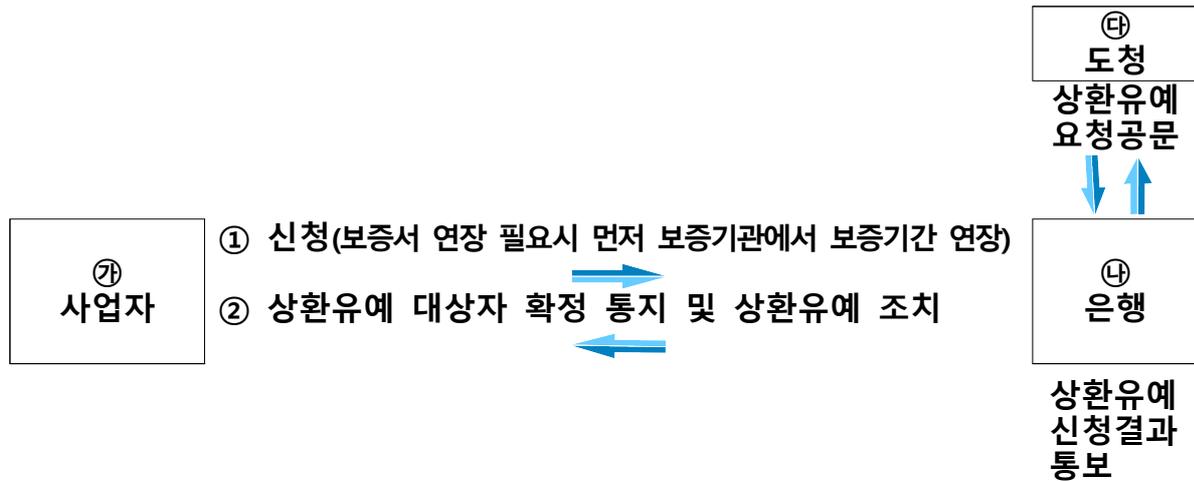
- 유예종류

- 상환기간 연장 : 원금 상환중일 경우
- 거치기간 연장 : 원금상환 기일이 미 도래한 경우

- 유의사항

-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용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 (중도 변경 불가)되며, 만기일자만 연장됨.
- 용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용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하기 때문에, 심사결과에 따라 용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.
-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.
- 보증기관 담보 용자자 중 신용불량자, 휴·폐업자 등은 상환유예 되지 않음.

□ 상환유예 흐름도



□ 상환 유예에 따른 비용 부담

- 도(→ 금융기관) : 해당없음
- 용자자 : 대출액에 대한 월별 이자(상환 및 거치기간 연장)

☞ 그 외 중도상환수수료, 보증서 변경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대출심사 조건에 따른 추가 발생 경비에 대해서는 용자자가 부담.

□ 추진일정

- 공고 : 2020. 2. 24.(월)
- 신청·접수기간(용자자 → 금융기관) : 2020. 3. 9.(월) ~ 4. 29.(수)

※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

- 문의사항
 - 용자 취급은행(제주은행, 농협)
 - 도 보건건강위생과(710 - 2943)

□ 적용기한

- 특별용자지간(2020. 4. 29.)까지